

2024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승강기 안전관리법」제41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승강기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1. 기본 유지관리비

가. 공동주택 승강기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기준층 또는 길이	기준 유지관리비		할증 금액	
			일반	휴일·야간	일반	휴일·야간
엘리베이터	승객용	6층	197,000	224,200	3,200	4,700
	장애인용	6층	202,000	229,700	3,200	4,700
	소방구조용	10층	229,000	261,200	3,200	4,700
	피난용	30층	383,000	448,500	3,200	4,700
	화물용, 자동차용	3층	198,000	225,900	3,200	4,700
	소형화물용	3층	163,000	184,800	2,700	3,700
	경사형	8m	258,000	298,000	2,900	3,000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8m	270,000	310,400	2,300	3,300
휠체어 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4m	172,000	195,400	-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4m	168,000	190,200	1,500	1,600

* 공동주택 승강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를 말함

나. 판매·운수시설 승강기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기준층 또는 길이	기준 유지관리비		할증 금액	
			일반	휴일·야간	일반	휴일·야간
엘리베이터	승객용	6층	259,000	291,100	3,200	4,700
	장애인용	6층	267,000	299,600	3,200	4,700
	소방구조용	10층	290,000	327,100	3,200	4,700
	피난용	30층	406,000	475,900	3,200	4,700
	화물용, 자동차용	3층	221,000	253,700	3,200	4,700
	소형화물용	3층	161,000	182,800	2,700	3,700
	경사형	8m	278,000	322,400	2,900	3,000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8m	360,000	404,800	2,300	3,300
휠체어 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4m	173,000	196,400	-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4m	169,000	191,200	1,500	1,600

* 판매·운수시설 승강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말함

다. 그 밖의 시설 승강기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기준층 또는 길이	기준 유지관리비		할증 금액	
			일반	휴일·야간	일반	휴일·야간
엘리베이터	승객용	6층	211,000	241,600	3,200	4,700
	장애인용	6층	216,000	247,200	3,200	4,700
	소방구조용	10층	241,000	276,700	3,200	4,700
	피난용	30층	410,000	478,900	3,200	4,700
	화물용, 자동차용	3층	221,000	252,300	3,200	4,700
	소형화물용	3층	166,000	187,800	2,700	3,700
	경사형	8m	284,000	327,400	2,900	3,000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8m	284,000	327,800	2,300	3,300
휠체어 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4m	172,000	195,400	-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4m	168,000	190,200	1,500	1,600

< 비교 >

- ① 유지관리비는 기존 유지관리비에 할증 금액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함
- ② 할증금액이란 기준층 또는 길이에 대하여 추가되는 층수 또는 길이에 따라 부가되는 금액임
- ③ 4m를 초과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를 적용함

2. 동일 장소의 승강기 대수별 대당 할인금액(공통)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승강기 대수			
	2 ~ 3대	4 ~ 5대	6 ~ 7대	8대 이상
대당할인 유지관리비	27,000	36,000	41,000	43,000

3. 표준유지관리비 산정의 일반적인 전제조건

가. 표준유지관리비의 기준

- 1) 유지관리 대수 : 1대
- 2) 유지관리 기간 : 1개월
- 3) 유지관리인력 : 2인

나. 유지관리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

- 1) 자체점검(월1회 기준) 및 고장발생 시 수리
- 2) 야간 및 휴일의 고장대기·긴급출동
- 3) 정기검사(년1회) 시 입회
- 4) 필요한 기술인력 및 설비를 보유하고 필요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보유

다. 이 표준유지관리비는 단순유지관리(P.O.G)계약을 기준으로 함

4. 산정기준

가. 표준유지관리비는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9호('22.03.02)「승강기 안전운영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22.12.13) 『202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및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른 물가 상승률을 적용함

- 1) 직접인건비는 유지관리기간, 유지관리횟수 및 유지관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승강기 기종에 따른 비목별 표준노무공수를 산출하여, 통계청에서 공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표준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함
- 2) 직접경비는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 투입인력의 여비교통비 및 소모품비* 등 유지관리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산출함
*소모품비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부품을 제외
- 3)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용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00%를 적용함
- 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및 제경비의 20%를 적용함

나. 할증금액은 기종별 기준층 또는 길이 증가에 따른 작업량 증가에 따른 비용이며, 할인금액은 동일 주소지에 다수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특성상 현장 이동시간에 대한 할인 금액임

다. 휴일·야간 할증금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에 규정한 자체점검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하는 경우 일반유지관리비에 추가되는 금액을 의미함

- 1) 추가금액에는 '자체점검시간', '현장이동 및 준비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2) 직접인건비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유지관리비에 추가되는 비용 특성상 직접경비와 제경비는 가산하지 않음